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

수신 전 조합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조 영업부서장

제목 「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」 알림 및 주지 요청(긴급)

1. 한공조 제2017-470호[폐기물 적정반입 및 공정거래 준수 협조 요청(2차), '17.9.29]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주기적으로 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당부한 바가 있으며, 최근에는 「코로나19」 및 재활용방치·투기 폐기물 등 소각 대상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폐기물 위·수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, 불임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“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”을 알려드리오니 귀사 운영 시 공정거래 저촉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동 행동준칙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전 임직원에게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



담당 이재덕 운영지원팀장 장대규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회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21 - 103호 (2021. 3. 24) 접수
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

1

공정거래위원회의 「사업자단체활동지침」에 의거 아래에 명시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- 가. 가격을 결정·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
- 나.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,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
- 다. 상품의 생산·출고·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
- 라.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
- 마.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- 바.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
- 사.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
- 아.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
- 자.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
- 차.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- 카.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
- 타.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
- 파.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

※ 공정위 고시 제2013-9호 「사업자단체활동지침」

2

국내 경쟁관련법 및 규정상 불공정 행위라고 의심될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,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해서는 안 된다.

3

조합[협회] 및 조합원사[회원사]는 이사회 뿐만 아니라 권역별회의 및 비공식 모임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